

[붙임]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

1. 주민 의견수렴의 목적

- 본 법성군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직·간접적인 환경상의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활한 사업수행과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.

2. 실시근거
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바임.

<표 2-1> 실시근거법

환경영향평가법	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제13조(주민 등의 의견 수렴)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	제19조(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)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·군·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.

3.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

- 제안자 : 영광군
- 관할 군 : 영광군 도시환경과
- 관할 도 : 전라남도 기후생태과
- 계획수립기관 : 해양수산부
- 협의기관 : 환경부
- 지방환경관서 장 : 영산강유역환경청

4.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및 공고

구 분	중앙일간지	지방일간지
공 고 신 문	신아일보	무등일보
공 고 일 자	2020년 10월 13일	
공 람 기 간	2020년 10월 13일 ~ 11월 11일(22일간, 공휴일 제외)	
주 민 설 명 회	2020년 10월 23일(금) 14 : 00(법성면 커뮤니티센터)	
공 람 장 소	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, 영광군 안전관리과, 영광군 법성면사무소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, 영광군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	
공 고 내 용	사업개요, 공람기간 및 장소, 주민설명회 개최, 주민의견 제출 등	

[신문 광고문]

<p>신아일보 2020년 10월 13일 19면 (공고/고시)</p> <p>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0-151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(변경) 공고 -법성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-</p> <p>"법성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(영광군)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·제15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「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」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0년 10월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</p> <p>1. 계획의 개요 가. 계획명: 법성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나. 위 치: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항 일원 공유수면 (법성리 1230-4번지 등) 다. 규 모: 93,000㎡(공유수면 매립 규모) 라. 사업시행자: 영광군</p> <p>2.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실시 가. 공람기간: 2020.10.13.(화)부터 2020.11.11.(수) (22일간) 나. 공람장소 1)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(☎ 061-280-1709) 2) 영광군 안전관리과 (☎ 061-350-5494) 3) 영광군 법성면사무소 (☎ 061-350-4946) 다.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1) 기한: 2020.10.13.(화)부터 2020.11.18.(수) 2) 방법: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 제출</p> <p>3. 주민설명회 개최 가. 일시: 1) 변경 전: 2020.10.21.(수) 14:00 2) 변경 후: 2020.10.23.(금) 14:00 나. 장소: 법성면 커뮤니티센터 (영광군 법성면 법성포로3길 26-10)</p> <p>4. 공고·공람 게시 가.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(http://mokpo.mof.go.kr) 나. 영광군 홈페이지(http://yeonggwang.go.kr) 다.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http://eiass.go.kr)</p> <p>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(☎ 061-280-1709, 담당자 전원민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17.0*16.7)cm</p>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무등일보 2020년 10월 15일 06면 (공고/고시)</p> <p>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0-151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(변경) 공고 -법성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-</p> <p>"법성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(영광군)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·제15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「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」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0년 10월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</p> <p>1. 계획의 개요 가. 계획명: 법성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나. 위 치: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항 일원 공유수면 (법성리 1230-4번지 등) 다. 규 모: 93,000㎡(공유수면 매립 규모) 라. 사업시행자: 영광군</p> <p>2.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실시 가. 공람기간: 2020. 10. 13. (화) ~ 2020. 11. 11. (수), 22일간 나. 공람장소: 1)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(☎ 061-280-1709) 2) 영광군 안전관리과 (☎ 061-350-5494) 3) 영광군 법성면사무소 (☎ 061-350-4946) 다.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1) 기한: 2020. 10. 13. (화)부터 2020. 11. 18. (수) 2) 방법: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 제출</p> <p>3. 주민설명회 개최 가. 일시: 1) 변경 전: 2020. 10. 21. (수) 14:00 2) 변경 후: 2020. 10. 23. (금) 14:00 나. 장소: 법성면 커뮤니티센터 (영광군 법성면 법성포로3길 26-10)</p> <p>4. 공고·공람 게시 가.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(http://mokpo.mof.go.kr) 나. 영광군 홈페이지(http://yeonggwang.go.kr) 다.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http://eiass.go.kr)</p> <p>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(☎ 061-280-1709, 담당자 전원민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9.1*16.8)cm</p>
신아일보(중앙일간지)	무등일보(지방일간지)

[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·공람 사실 게시]

해양수산부
목포지방해양수산청

정보공개 민원바다 알림마당 여객·안전 항만정보 항만/어항건설 항로표지 해양수산환경 기관소개

알림마당

공지사항 >

입찰안내

보도자료

정책뉴스

포토뉴스

공지사항

알림마당 > 공지사항

인쇄

[공고]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(변경) 공고

부서	담당자	진현민
해양수산환경과		
등록일	2020. 10. 13.	조회수 2

첨부파일

-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(변경) 공고.html [미리보기](#)
- (초안 요약서)법성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(양식) 주민 의견 제출서.hwp [미리보기](#)

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0-151호

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(변경) 공고
법성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-

“법성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(영광군)”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·제15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‘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’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13일
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

QUICK

- 자주하는 질문
- 국민신문
- 방문상담

SITE LIN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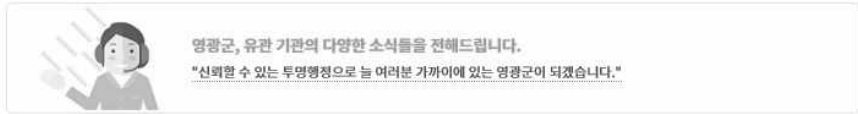
- SP-IDC
- 해기사시험접수
- 기보고 실문 섬
- 특도종합정보 시스템
- 해양기상정보

- 열린군정
- 군정소식
 - 공지사항
 - 군정일정
 - 보도자료
 - 인사/채용
- 유관기관소식
- 공고고시
- 미디어영상
- 일반행정
- 예산결산정보

유관기관소식

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.

홈 > 열린군정 > 군정소식 > 유관기관소식



제목	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(변경) 공고		
작성자	안전관리과	작성일	2020-10-14
첨부	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_공람_및_주민설명회_개최(변경)_공고.hwp (15KB) 미리보기 주민의견제출서식.hwp (27KB) 미리보기		

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0-151호

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(변경) 공고 법성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

“법성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(영광군)”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·제15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‘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’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13일
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

- QUICK 메뉴
- 조직도
- 청사안내
- 입찰공고
- 예산서
- 통계연보
- 예술의전당
- 스포티움
- 군립도서관
- 영광군노조



국민참여

National participation

- 협의진행현황 +
-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+
- **평가서 초안 공람 -**
- 사용자지원 +
- Q&A
- FAQ
- 공지사항

평가서 초안 공람 - 전략환경영향평가

사업명	영광군 법성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	
사업위치	* 면명	
	소재지	면적
	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(면우로 47) 법성항 일원	
협의대상 (협의관련법령)	* 행정계획 [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]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	
사업구분	매립 /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(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)	
사업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사업시행자 : 영광군 * 승인기관 : 해양수산부 * 사업규모 : 93000㎡ * 사업비 : 300 억원 	

초안공람 주민의견수렴

■ 협의업무 담당

협의기관	환경부	담당자	조원형
담당부서		E-mail	star4588@korea.kr
전화번호	044-201-7300	Fax번호	02--

■ 초안공람

초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장 요약문.pdf * 2장 개발기본계획의개요.pdf * 3장 개발기본계획의 대안 및 입지대안.pdf * 4장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.pdf * 5장 지역개발.pdf * 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내용.pdf * 7장 평가항목의 결정내용.pdf * 8장 주민의견 수렴계획.pdf * 9장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.pdf * 10.1.1 생물다양성 - 서식지 보전(해양생태계).pdf * 10.1.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.pdf * 10.1.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.pdf * 10.1.4 수환경의 보전 - 가, 수질, 나, 해양수질 및 해양퇴적물.pdf * 10.1.4 수환경의 보전 - 다, 해양플러리.pdf * 10.2.1 생활환경의 안정성-환경기준부합성-가, 기상.pdf * 10.2.1 생활환경의 안정성-환경기준부합성-나, 대기질.pdf * 10.2.1 생활환경의 안정성-환경기준부합성-다, 악취.pdf * 10.2.1 생활환경의 안정성-환경기준부합성-라, 온실가스.pdf * 10.2.1 생활환경의 안정성-환경기준부합성-마, 소음진동.pdf * 10.2.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.pdf * 10.2.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.pdf * 10.3.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.pdf * 11장 종합평가및결론.pdf * 12장 부록.pdf * 표지.pdf * 목차.pdf 		
초안 공고일	2020.10.13	초안공람 기간	2020.10.13 ~ 2020.11.11
공람 장소	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, 영광군 안전관리과, 영광군 법성면사무소		
설명회 일시	20201023(14:00)		
설명회 장소	영광군 법성면 커뮤니티센터(법성면 법성포로3길 26-10)		
의견제출 기간	2020.10.13 ~ 2020.11.18		
부서명		전화번호	

5.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

-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 결과 다음과 같은 주민 및 기관 의견이 제출되어 사업계획에 반영함.

■ 주민설명회시 의견

구분	의견요지	반영내용
주민	○ 물양장 앞 매립부분 법성매립지에 맞춰서 매립 면적을 더 넓히는게 좋을 거 같다. 어차피 남은 부분은 퇴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거 같다	○ 당초 물양장 앞 부분은 매립계획이 없었으나, 어촌계에서 제안하여 계획에 포함한 것으로 해수부에 요청하겠으나, 매립면적이 넓어지는 것은 부정적이라 어려울 듯 함
	○ 토지이용계획은 어떻게 되는것인지? 용도 결정은 언제쯤 하는가?	○ 금년 3월에 대략적인 구상은 협의회에서 제시되어 매립기본계획 요청서에 반영하였고, 실시설계 계약으로 추후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협의회에서 신중하게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내 확정하려고 함
	○ 개수로 수문을 설치했는데 무슨 용도인가?	○ 당초 개수로 물을 담수하여 관상용 물고기도 키우는 등 계획이 있었으나, 결론적으로 방재(물을 막는) 용도로 최종 설계 및 공사 준공되어 재해 방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
	○ 퇴적된 곳을 준설하여 매립을 하면 좋을거 같다. 준설을 많이 해야한다	○ 현재 준설토를 이용하여 매립용으로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나, 뱃길(개웅) 전체에 대한 준설은 준설토 처분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

■ 초안보고서 검토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

1. 영광군 도시환경과

구분	의견내용	반영내용
영광군 도시환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회 법성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관련 부처의 협의의견 사항을 최대한 준수하고, 승인기관 및 해당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회 계획수립에 따른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관련부처 의견 수렴을 이행하였으며, 이에따른 의견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음. 또한 계획수립기관 및 해당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검토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작성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 대책(민원 방지 및 민원 해결방안 포함)을 신속히 강구·시행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에 대한 검토의견을 본안 작성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, 평가시 예측지 못한 부적정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토록 하겠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변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과 저감 방안을 설명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이해관계인들에게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과 저감 방안을 설명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였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사 시 토사가 유출 등 수생태계 및 생활환경에 영향이 되는 것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감 대책 마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사시 준설 및 매립시행에 따른 토사 유출이 우려되는바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오탁방지막, 단계별 시행등을 통해 최소화토록 하겠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발생 방지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시기 바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방진망, 공사장비 운행 속도 제한 등 이행토록 하겠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사장 인근 축사 및 마을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소음·진동 방지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시기 바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사장 인근 축사 및 마을등에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장비 적정분산투입, 가설방음판넬 등을 계획하였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사 및 운영 시 자연환경 훼손 및 발생하는 폐기물, 생활하수에 대하여 처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영광군내 수거업체를 통해 적정 처리토록 할 계획이며, 생활하수는 법성 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계획하였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변 동·식물에 대한 기관 및 전문가와 적절한 보호(보존) 대책 수립 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호대책 등을 수립하여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검토하여 수립토록 할 것임.

구분	의견내용	반영내용
영광군 도시환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시행자는 공사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상 영향 및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추가적인 저감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시 및 운영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상 영향 및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, 해당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용토록 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수립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할 계획이며,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계획수립토록 하겠음.

2. 전라남도 기후생태과

구분	의견요지	반영내용
전라남도 기후생태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평가서에서 예측한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, 자연환경특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토록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,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이행하여 법성항 일대 자연환경특성을 최대한 유지할수 있는 방안을 수립·시행 하겠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연경관의 보전과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고, 주변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매립 시행을 통한 부지는 녹지부지를 확보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하였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준설 예정지역의 토사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준설토 투기장 반입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준설예정지역의 토사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, 준설토 투기장 반입 여부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토록 하겠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시 오탉방지막 훼손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,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공사 중단 및 오탉방지막을 복구하는 등 효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시 오탉방지막 설치시 주기적으로 훼손 여부를 충분히 점검하고, 훼손시 즉시 교치를 통해 효율이 유지될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, 건설폐기물, 해양폐기물, 공사 장비의 폐유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, 건설폐기물, 해양폐기물, 공사장비의 폐유 등은 영광군 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6조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또는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사업에 해당될 경우, 승인기관에서는 사업 승인시 20일 이내에 부과기관인 우리 도에 승인내역을 제출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사업은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6조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또는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사업에 해당 됨. 이에 따라 사업승인 시 20일 이내에 부과기관에 승인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·허가는 사전에 득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·허가는 사전에 득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될 경우, 별도의 대책 및 민원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·시행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될 경우, 별도의 대책 및 민원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·시행토록 하겠음.

3.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

구분	의견요지	반영내용
환경부 환경영향 평가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회 개발계획은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항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풍수해위험을 방재하면서 매립완료된 상부 토지에 어항시설, 문화복지시설, 공원·녹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나 ○ 금회 평가서(초안)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지 않고도 풍수해 예방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설정을 실시하고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도 검토·제시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유수면 매립을 하지 않고 풍수해 예방이 가능한 대안 등을 수립하여 비교 검토토록 할 계획이며, 「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을 및 부합성을 검토후 제시토록 하겠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또한, 개발계획 대상 지역의 해양환경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, 해양생태도의 등급, 자연환경보전지역 현황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대로 현황자료를 제시하는 등 아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성항 일대 해양환경 조사 결과 및 해양생태도 등급, 자연환경보전지역 현황 등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현황자료를 제시토록 할 계획임.
	<p>1.계획의적정성</p> <p>가. 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회 평가서 초안에 3개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나, Action/No Action의 경우에는 매립계획을 수립·시행하였을 경우와 수립·시행하지 않았을 경우(유지준설, 방재언덕 설치, 하수도 정비, 배수펌프장 설치 등으로 풍수해를 예방하는 대안 포함)로 설정하고 장·단점 분석 결과 및 평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안 작성시 대안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Action/No Action의 경우에는 매립계획을 수립·시행하였을 경우와 수립·시행하지 않았을 경우(유지준설, 방재언덕 설치, 하수도 정비, 배수펌프장 설치 등으로 풍수해를 예방하는 대안 포함)로 설정하여 장·단점 분석 결과 및 평가 결과를 제시토록 하겠음.
	<p>나.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회 개발계획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과 영광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, 영광군 연안관리지역계획(연안용도지역, 해당 기능구 등)과의 연계성 검토 및 부합 여부를 평가한 후,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회 법성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과 상위 관련계획인 영광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, 연안관리지역계획 등 연계성 및 부합여부를 검토후 그 결과를 제시토록 하겠음.

구분	의견요지	반영내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회 개발계획 수립·시행 전 어항구역과 면적, 수립·시행 후 어항구역과 면적을 육역부와 해역부로 각각 구분하고 관련 도면(항계선 표시 포함)과 함께 제시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회 개발계획 수립·시행 전 과 수립·시행 후 어항구역, 면적을 육역부와 해역부로 각각 구분하고 관련도면(항계선 표시 포함)과 함께 제시토록 하겠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회 개발계획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이후, 오수 및 우수의 배수계획을 배수 처리계통도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회 개발계획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이후, 오수 및 우수의 배수계획을 처리계통도와 함께 제시토록 하겠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울러, 매립으로 인해 우수유출수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해당 지역의 우수배제계획과 함께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립으로 인한 우수 유출수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해당지역의 우수배제계획 및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토록 하겠음.
<p>환경부 환경영향 평가과</p>	<p>2.입지의타당성</p>	
	<p>가. 자연환경의 보전</p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성포 해역은 현재 수질이 COD 6~9 mg/ℓ, 수질평가지수 나쁨 상태이고 금회 매립계획의 수립·시행으로 인근 주거·상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수로 내 조간대인 완충구역을 거치지 않고 외측해역으로 배출되어 주변 해양환경이 악화 될 가능성이 있음. ○ 따라서 수로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현황(점오염원, 비점오염원 등)을 조사하고,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해양오염을 저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성포해역은 현재 해양수질이 COD 6~9mg/ℓ, 수질평가지수 나쁨상태로, 주변 해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로 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현황(점오염원, 비점오염원 등)을 조사하고,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해양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·제시토록 하겠음.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국 연안해역의 해양생태계의 생태적 가치 및 경관적 가치를 평가하여 작성한 해양생태도 등급을 제시하여야 함(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4-182호 참조)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도 등급을 조사하여 제시토록 하겠음. 	

구분	의견요지	반영내용
환경부 환경영향 평가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발계획 수립·시행에 따른 부유사확산 수치모형 시험결과와 부유물질 발생에 의한 어업권에 대한 영향예측 결과,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하나의 도면에 중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영향을 예측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회 사업시행으로 인한 준설시 부유사확산 수치모형 실험결과를 법성항 인근 어업권현황과 중첩하여 정략적으로 영향예측·평가하여 그결과를 바탕으로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토록 하겠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회 공유수면매립지역의 갯벌에 대한 해양 동·식물상 및 해양환경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갯벌 건강성 등급*을 제시하여야 함. * 해수부(2005)에서 발행된 보고서 “갯벌 생태계조사 및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 연구” 내용을 기준으로 갯벌 등급화를 실시하고 갯벌 건강성 등급을 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수부(2005)에서 발행된 보고서 “갯벌 생태계조사 및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 연구”를 참조하여 금회 준설 및 매립지역의 갯벌 건강성 등급을 제시토록 하겠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지구와 인근의 해양 동·식물상(법정 해양 보호생물 서식 여부 포함), 해양 수질, 해양 저질의 현지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지구와 인근 해양 동·식물상(법정 해양보호생물 서식 여부 포함), 해양 수 및, 해양저질의 현지조사 결과를 본안 작성시 제시토록 하겠음.
	<p>나. 기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회 사업계획 지역과 인근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“자연환경 보전지역” 포함 여부를 제시하고 포함 될 경우, 사업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하나의도면에 중첩·표현하여 제출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회 사업계획 지역과 인근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“자연환경 보전지역” 과 사업지구는 직선거리상 남서측으로 2.81km 이격 분포 함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, 직책, 성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·제출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, 직책, 성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 작성·제출토록 하겠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“해양환경” 항목에 대하여 재대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. 끝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“해양환경” 항목에 대하여 재대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토록 하겠음.

4.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

구분	의견요지	반영내용
영산강 유역 환경청 환경평가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건은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항 일원에 '법성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' 반영을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(초안)에 대한 검토의견임 	-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계획의 적정성) 법성포 주변 해역은 해양수질 COD 6~9mg/l, 수질평가지수 “나쁨” 상태이나, 동 사업계획에 따라 기존 수로를 매립할 경우 주변 주거 및 상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수로 내 완충구역(조간대)을 거치지 않고 해역으로 배출됨에 따라 해양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사업계획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성포 주변해역은 해양수질 COD 6~9mg/l, 수질평가지수 “나쁨” 상태이며, 기존 수로 매립 시 주변 주거 및 상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수로 내 완충구역(조간대)을 거치지 않고 해역으로 배출 될 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사업계획을 검토·제시토록 하겠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) 금회 개발기본계획과 영광군의 연안관리지역계획,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,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여부 등의 검토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회 개발기본계획과 영광군의 연안관리지역계획,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,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여부 등의 검토결과를 제시토록 하겠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)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 조사지역(법성포) 등이 계획지구 내에 분포하고, 동 지역 내 법정보호종(수달, 저어새, 노랑부리저어새 등)이 확인되며 주변 조간대 조사결과, 다양한 조간대 생물, 해조류 및 저서생물이 서식하는 바, 계획지구 동·식물상(해양동·식물상 포함) 조사결과를 토대로 영향예측 및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 조사지역(법성포) 등이 계획지구 내에 분포하고, 동 지역 내 법정보호종(수달, 저어새, 노랑부리저어새 등)이 확인되며 주변 조간대 조사결과, 다양한 조간대 생물, 해조류 및 저서생물이 서식하는 바, 계획지구 동·식물상(해양동·식물상 포함) 조사결과를 토대로 영향예측 및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음.

구분	의견요지	반영내용
영산강 유역 환경청 환경평가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수환경 보전) 동 사업지구 상류에 위치한 시가지로부터의 우수흐름으로 침수가 가중되지 않도록 원활한 우수배제계획을 수립하고, 문화복지시설 및 공원 등의 조성계획은 불투수층의 확대로 비점오염물질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오염물질의 현황(점·비점오염원 포함)을 면밀히 조사하고, 비점오염물질의 저감방안을 강구·제시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지구 상류에 위치한 시가지로부터 우수흐름으로 침수가 가중되지 않도록 원활한 우수배제계획을 수립토록 할 것이며, 문화복지시설 및 공원 등의 조성계획은 불투수층의 확대로 비점오염물질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오염물질의 현황(점·비점오염원 포함)을 면밀히 조사하고, 비점오염물질의 저감방안을 강구·제시토록 하겠음.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환경기준부합성) 평가서(p456) 건설장비의 이격거리별 예측소음도 및 합성소음도 등은 「공사장 환경분쟁사건 소음·진동도 산출방법 개선연구, '07.11 중앙환경분쟁위」를 적용하여 예측·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. 끝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장비의 이격거리별 예측소음도 및 합성소음도 등은 「공사장 환경분쟁사건 소음·진동도 산출방법 개선연구, '07.11 중앙환경분쟁위」를 적용하여 예측·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시토록 하겠음.